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21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(2025. 2. 12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)

가. 개정이유

❍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(2021. 5. 18.)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표준안 반영

❍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‘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’, ‘협력체계 구성 등’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

❍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

나. 주요내용

❍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)

❍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
❍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의3)

❍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1조~제12조)

다. 관계법령

❍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❍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조의3(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)

❍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4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❍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표준안은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❍ 검토결과,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지역 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와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조례의 시행에 있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기준 및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그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